

	<h2>장학규정</h2>	규정번호	3-6-6
		제정일자	2016.03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5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(정부·지방자치단체·사설및기타)으로 구분한다.

② 교내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

③ 교외장학금 명칭은 기탁기관에서 지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별도의 명칭이 없을 경우 총장이 정한다.

제3조(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추천) ① 장학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는 매 학기 신청기간 내 관련 서류를 학생성공처에 제출한다.

② 총장 및 학생성공처장은 학교에 공로가 있는 자를 특별추천 할 수 있다.

제4조(장학생 선발) ① 학생성공처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에 상정 심의·의결을 받는다. 다만, 등록금 감면 장학을 제외한 선발기준에 의한 경우 심의·의결을 생략한다.

② 교외장학금은 기탁기관 선발기준에 따르며 기탁기관의 선발기준이 없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받는다.

제5조 (장학금 지급 및 범위) 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. 다만, 등록금 감면 장학을 제외한 선발기준에 의한 경우 의결을 생략한다.

②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한도 내 지급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교내장학금은 [별표 1]의 지급한도가 등록금 초과인 경우
2.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외 지원목적인 경우
3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

④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. (다만, 경제적 사정 곤란자라 함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또는 희망장학금 및 기회균등장학금 등 수급 대상자를 말한다.) 신설<2024.09.01.>

제6조(장학금액)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총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② 교외장학금은 기탁기관의 지정금액을 지급하나 미지정한 경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실격 및 환수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지급을 중지하고 기지급한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2항에 따라 환수한다.

1. 자퇴·제적 등 학적을 상실한 자
2. 학칙에 의거 정학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은 자
3. 성적우수(성적 석차에 의한 장학)·공로장학생(총학생회,대의원회,언론기구) 중 직전 학기 취득학점은 학칙 제38조 ③항 ④항 기준 미만인 자, 평점평균은 3.0 미만인 자(공

로장학생 평점평균은 2.5 미만인 자)

4. 휴학자. 다만, 장학생 선정 이후 휴학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5. 총장이 명한 제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

6. 장학생 선정 이후 불가항력(사망, 실종 등)의 사실이 확인된 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(사망, 실종 등)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기존의 장학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